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 년 11 월 28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주)킹슬리자산운용
(영문명) Kingsley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kingsleykore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10층(반포동, 코웰빌딩)
(전 화) 02-6012-2100

대 표 이 사 : 최 은 영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최 은 영 (전 화)02-6012-2100

작 성 자 : (직 책)부장
(성 명)장 동 식 (전 화)02-6012-210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 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0-1호)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명	이준엽, 박종인외2명
		소유주식수(주)	130,000, 130,000
		소유비율(%)	25%, 25%
	변경후	최대주주명	이준엽, 박종인외2명, 노기철외1명
		소유주식수(주)	130,000, 130,000, 130,000
		소유비율(%)	25%, 25%, 25%
2. 변경사유		기타주주의 주식양수	
3. 지분인수목적		지분투자	
- 인수자금 조달방법		자기자금	
-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없음	
4. 변경일자		2018년 11월 27일	
5. 변경확인일자		2018년 11월 28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이준엽	변경전후 최대주주	130,000	25	130,000	25	
박종인	변경전후 최대주주	50,000	9.62	50,000	9.62	박진형, 박기형의 부
박진형	변경전후 최대주주	40,000	7.69	40,000	7.69	박종인의 자
박기형	변경전후 최대주주	40,000	7.69	40,000	7.69	박종인의 자
노기철	변경후 최대주주	50,000	9.62	80,000	15.38	김영경의 자
김영경	변경후 최대주주	50,000	9.62	50,000	9.62	노기철의 모

<기재상의 주의>

주1) 최대주주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한다.

주2) “최대주주명”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

주3) “소유주식수”는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포함)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4) “소유비율”은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주5)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3. 인수목적(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포함)”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주6) 【세부변경내역】은 변경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변경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7) “관계”는 변경전 최대주주,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후 최대주주 또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변경전·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주8)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

주9)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0)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